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2. 4. 이기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6. 2. 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32회 국회(임시회)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 2. 23.)

-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25.)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 폐기)

-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 2. 26.)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기현 의원)

현행법은 저작재산권자 등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업을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규정하고 저작물 이용허락의 거부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저작권재산권자 등이 권리를 신탁하는 과정에서 지분권이나 공연·복제·전송 등 이용형태별로 권리의 일부를 신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권리 신탁 범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의 저작물 이용허락 과정에서 객관적 기준 없이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문제되고 있음에도 이를 실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라 관리업자는 의무적으로 연도별 사업보고서에 임원보수 만을 공개하고 있으나 임직원에게 보수 외에 업무추진비 등 각종 수당을 따로 지급하고 있어 방만한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9조제1항의 각 호 규정을 위반한 관리업자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명령이 누적되어도 집행되지 않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신탁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와 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 등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저작권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저작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임오경의원)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 요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권리를 신탁한 회원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및 수당을 결정할 권리를 부여한 개정안 제105조의3제1항제5호 중 “임직원”을 “임원”으로 수정함.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기타사항

없음.